

부동산 관련 중요한 정보

오류 정정 또는 재무부의 결정에 이의 제기:

nyc.gov/updatepropertydata에서 다음과 같은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
- 재무부 문서나 웹사이트상의 잘못된 부동산 정보 수정.
- 부동산 가치에 대한 재무부의 결정에 이의 제기.
- 재산세 면제나 경감에 대한 재무부의 부정 또는 제거 결정에 이의 제기. (세금 면제가 거부된 경우, 뉴욕시 세무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. 자세한 정보는 nyc.gov/html/taxcomm 을 방문하세요.)

311번으로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

재산세 관련 중요한 날짜



1월	재무부의 부동산 가치 통지
2월	주택 조합(Co-op)/콘도에 대한 경감 신청 마감일
3월 1일	세무 등급 2 및 세무 등급 4 부동산 감정 가격에 대해 NYC 세무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.
3월 15일	개인 소득세 면제 신청 마감. 세무 등급 1 부동산 시장 가격에 대해 재무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감정 가격에 대해 NYC 세무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.
4월 1일	세무 등급 2 및 세무 등급 4 부동산 시장 가격에 대해 재무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.
5월	재무부가 최종 과세표준부(Assessment Roll)를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해에 대한 재산세 청구서 생성.
6월	납세자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해당 연도의 부동산세 청구서를 처음으로 접수.
7월 1일	새 과세연도 시작: 전년도의 세율에 따라 납세자에게 세금이 부과됨. 시의회에서 새로운 세율을 정하면, 연초의 세금은 재계산됨.

납세자 보호 사무소(The Office of the Taxpayer Advocate)는 재무부의 독립 기관입니다. 납세자들이 재무부와 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며 향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수정을 권고합니다. 사무소는 뉴욕시 납세자 권리장전에 따라 납세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.

납세자 보호 사무소



영업세

재산세

회계 감사

추심 계정

면제

임대료 동결 프로그램

NYC
Department of Finance

납세자 보호 사무소에 연락하세요

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재무부*와 합리적으로 노력했지만 만족스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, 납세자 보호 사무소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

다음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저희에게 연락하세요.

1. 재무부가 세법, 규정 또는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부정확하게 적용했거나 납세자인 귀하의 권리를 거부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.
2.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이거나 오류로 인해 귀하의 계정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재무부가 즉각적인 유해 조치(예: 자금 또는 재산 압류)를 취할 위협에 직면한 경우.
3. 구제를 받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.
4. 재무부의 체계 문제가 다른 납세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파악한 경우.
5. 귀하 케이스의 고유한 사실들이 귀하를 돕는 납세자 보호 사무소의 공공정책적 정당성을 강력하게 제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.

*재무부에 문의하려면 nyc.gov/contactdof를 방문하세요.

다음과 같은 경우 납세자 보호 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

- 일반적인 재무부 채널을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한 합당한 시도(311번으로 문의 포함)를 하지 않은 경우.
- 법적 조언이나 세금 준비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.
- 세무 위원회(Tax Commission), 조세 심판원(Tax Appeals Tribunal) 또는 주 법원에 사건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계획이거나 그 기관들의 결정에 항소 중인 경우.
- 뉴욕시 세법 또는 조세 체계가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경우.
- 납세자 보호 사무소가 문의 목적을 뉴욕시 세금 신고 또는 지불을 연기하거나 피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한 경우.
- 주차위반 딱지, 판매세, 개인 소득세 또는 연방 소득세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.



장애로 인해 재무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받거나 프로그램 참여에 편의시설이 필요한 경우, 웹사이트(nyc.gov/contactdofeeo)를 통해 장애 서비스 촉진자(Disability Service Facilitator)에게 연락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하세요.

납세자 보호 사무소에 연락하세요

납세자 보호 사무소의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웹사이트(yc.gov/taxpayeradvocate)를 방문하여 DOF 911, "Request for Assistance from the Office of the Taxpayer Advocate(납세자 보호 사무소에 지원 요청)" 양식을 작성하세요.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방법으로 직접 연락하세요.

- 이메일:
nyc.gov/taxpayeradvocate
- 전화:
311 또는 (212) 748-4785
- 팩스:
(646) 500-6907
- 우편:
NYC Office of the Taxpayer Advocate
375 Pearl Street, 26th Floor
New York, NY 10038

납세자 보호 사무소는 다음과 관련된 문제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

- 재산세 및 면제
- 영업세
- 회계 감사
- 추심 계정
- 임대료 동결 프로그램 및 기타 혜택